

# 교육과정혁신센터운영규정

제정: 2022.10.01.

개정: 2022.12.01.

개정: 2023.10.16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대원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 직제규정에서 정한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하게 관리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조직 및 구성) 센터는 센터의 목적 달성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

1. 센터장: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2. 운영위원회: 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고 한다.)를 둔다.
3. 운영분과: 센터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분과를 둘 수 있다.
4. 협력기구: 교무처, 사무처 등 교육과정혁신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내·외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10.16.>
5. 연구 및 행정: 본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 및 책임교수, 연구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업무) 본 센터는 전공·교양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.

1. 현장중심기반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 계획 <개정 2023.10.16.>

2. 교육과정개발 관련 교육 및 연수 <개정 2023.10.16.>
3. 교육과정개발 컨설팅 <개정 2023.10.16.>
4. 융합교육과정 개발 <개정 2023.10.16.>
5. 교육과정 인증 <신설 2023.10.16.>
6.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<신설 2023.10.16.>
7. 교육과정관련 교원연수 및 운영 지원 <신설 2023.10.16.>
8. 교육여건 개선 업무 지원 <신설 2023.10.16.>
9. 교양교육과정 개발 업무 <신설 2023.10.16.>
10. 교양교육과정 운영계획 <신설 2023.10.16.>
11. 교양교육과정 운영 분석 및 평가 <신설 2023.10.16.>
12. 기타 대학발전 및 본 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<신설 2023.10.16.>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구성 및 임기)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운영위원은 교직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.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22.12.01., 2023.10.16.>

③ 위촉된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심의)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의 기본 운영 계획 및 평가
2. 센터의 분야별 사업 활동
3. 운영 규정 개정
4.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